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이병진·조 국·이연희

박희승 • 윤준병 • 송옥주

권칠승 · 강유정 · 주철현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부가 차산업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 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

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신설).

법률 제 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를 "5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정책의 분석 평가 및 점검
- 3. 차산업 관련 제도의 개선
- 4. 차산업 및 차문화 관련 연구의 수행
- 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6.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차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2. 차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
- 3. 학계 및 차산업 관련 업계의 전문가
- 4. 그 밖에 차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 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하</u>	<u>5</u>
<u>여</u> 시행하여야 한다.	<u>년마다 수립하여</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5조
	의2에 따른 차산업발전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u><신 설></u>	한 같다.
	제5조의2(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
	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산업발전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u>다.</u>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정책의 분석·평가 및 점검
- 3. 차산업 관련 제도의 개선
- 4. 차산업 및 차문화 관련 연구의 수행
- 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정책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6.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차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 공무원
- 2. 차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
- 3. 학계 및 차산업 관련 업계의

<u>전문가</u>

4. 그 밖에 차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